

山林의 經濟的, 公益的機能 調和 있게 發揮토록



林鍾潤
營林局長

每年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해의 일을 設計하고 그 計劃한 일들이 잘 推進되기를 바라면서 热心히 努力할것을 다짐하고 出發한다.

이러한 面에서 볼 때는 이 해도 例年과 다를 것이 없겠으나 돌이켜보고 또 면앞날을 내다보면 今年은 여느 해와는 다른 特別한 意味가 있는 해라고 생각된다.

이는 激動과 變革의 80年代를 온 國民의 成熟된 力量으로 슬기롭게 克服하고 大望의 2000年代를 不過 10年後에 맞이하기 위해 여러가지 準備를 해야 하는 90年代의 첫해 문턱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國家社會發展의 重要한 年代임을 발맞추어 우리 林政面에서도 '90年은 그 어느해보다도 할일이 많고 또한 未來指向의in 알찬 計劃下에 發展과 도약의 발판을 이룩해야 할 해라고 본다.

즉, '90年代는 '70年代에서 '80年代로

이어진 期間中에 우리 모두가 애써 이룩한 綠化된 山林을 名實共의 資源化함과 아울러 經濟成長과 產業化, 都市化 趨勢에 따른 各種 產業用地의 圓滑한 供給 및 날로增加되고 있는 國民의 自然休養 需要充足에도 힘을 기울여 山林의 經濟的, 公益的機能을 調和 있게 發揮할수 있도록 施業을 추진함이 當面課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時代의 要請에 副應하여 今年度 營林(營林局 所管)의 主要施策을 山地의 合理的 利用體系定立, 山林經營의 基盤이 되는 林道施設擴充, 國民需要에 副應하는 自然休養林 造成, 各種 產業用材의 安定的 供給對策, 山林의 經濟的, 公益的機能增大를 위한 成果的in 國有林經營管理, 이와 같은 施策의 效率的in 推進을 위한 法令이나 制度의 改善等에 重點을 두고 한해의 일을 알차게 推進할 計劃이다.

1. 山地의 合理的 利用體系 定立

○山地利用 區分調查

林業은 生產期間이 수십년이 걸리는 長期產業이고 또한 山林은 한번 破壞되면 원상회복에 많은 努力과 오랜세월이 걸리는 屬性이 있는점과 온 國民과 山主의 多樣한 山地利用 欲求面을 考慮할 때 不便과 浪費 없는 山地管理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合理的in 山地利用區分에 의한 利用體系가 確立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89년까지에는 全國 650萬ha의 山地를 앞으로 繼續 山林으로 가꾸어갈 林地(保全林地)와 必要에 따라 다른 用途로 用할 수 있는 林地(準保全林地)로 區分하는 一段階調查를 完了하였으며 今年에는 이를 基礎로 다시 保全林地를 生產林地와 環境林地로, 準保全林地를 農地, 草地, 宅地, 工場用地等 產業用地로 細分하는 調查를 하여 각 林地別 長期指標를 設定하고 山地를 保存과 開發의 調和있게 推進되도록 施策基盤을 構築할 것이다.

○營林計劃 作成運營

山林經營의 基本이 되는 營林計劃은 年次別 作成計劃에 따라 該當年度 山林에 대하여 着實히 編成 認可토록 할 것이다.

그러나 現 營林計劃 制度는 不合理한 점이 많아 이를 改善코자 작년말에 山林法의 關聯條項을 改正하였으며 이에 따른 同施行令 및 施行規制과 運營條件이나 山主 및 社會欲求에 副應하는合理的인 營林計劃制度가 定着되도록 할 計劃이다.

앞으로 細部施行規定을 定함에 있어서는 作成對象山林, 面積規模, 計劃期間等 作成基準을 合理的으로 檢討하고 作成時에는 반드시 山主參與下에 營林技術者가 作成케 하여 實現性있는 計劃이 되게 하며 認可된 營林計劃上의 施業을 할 때는 申告로서 實行할 수 있도록 하는등 行政規制를大幅 緩和하여 山主의 自律經營을 助長하는 方向으로 檢討할 계획이다.

○山林의 土地公概念的 管理

近年 土地投機가 盛行하여 社會의 物의가 深化됨에 따라 政府는 이를 根絕하고자 이에 關聯된 稅法을 盤備하고 여러가지 土地公開念法을 制定하여 施行段階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와 같은 政府의 土地投機 抑制施策에서 林野도例外가 될 수 없어 작년말에 改正한 山林法에 林野去來時는 賣買證明書를 發給받도록 하는등 規制條項이 設定됨에 따라 今年 上半期內에 細部施行規定을 마련하여 積極 對處해 나갈 計劃이다.

즉, 山林은 實需要者가 經營目的으로만 保有토록 하기 위하여去來時에는 買收者가 5年間의 經營(利用)計劃書를 提出하여 市長·郡守의 實需要證明書를 發給받아 賣買하도록 하는 内容이 主要骨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買收林野의 事後 管理를 위하여 賣買證明을 發給받아 買收한 林地를 計劃대로 經營치 않을때는 代執行等으로 經營케 하고 만일 5年内에 短期專賣를 할 경우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優先 買收토록 하며 實需要證明을 虛偽,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發給받은 때에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の罰金에 처하도록 하고 山林經營以外의 目的으로 買收한 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計劃대로 利用하지 않거나 所定 期間內에 目的事業을 着手하지 않을 때는 500萬원 以下の過怠料를 賦課하는 등으로 規定되어 있으므로 非需要者가 投機目的으로 買收할수 없도록 強力히 規制케 될 것이다. 그리고 山林을 經營하지 않고 保有目的으로 放置하는 경우에는 綜合土地稅, 其他 여러가지 土地公概念法에서 높은 課稅가 되는등 不利益이 따를 것으로 본다.

그러나 行政의 複雜性, 民願의 便宜性面을勘案 發給對象 林野는 規制의 必要性範圍內에서 定하고 또한 投機目的 買收가 아 님이 明確한 경우에는 除外하는등으로 誠實經營者에게는 不便이 없도록 檢討될것이

며 특히 營林計劃을 作成하여 着實히 經營하는 山林에 대하여는 各種規制의 緩和는 물론 稅制나 事業費의 補助 및 融資等 金融面에서도 政府支援을 優先하게 될 것이다.

2. 林道施設의 擴充

林道는 山林經營面에서 볼 때 人體의 동맥과 같은 귀중한 施設이며 地域社會開發에도 크게 寄與하는 多目的 交通手段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開設함에는 많은 施設費가 所要되어 그동안 綠化施策 優先推進으로 事業이 不振하여 現在까지 總施設距離는 2,000km에 不過한 實情이다.

더욱이 山林을 集約的으로 經營하려면 奧地의 人力輸送이나 作業의 機械化가 緊要한 現實임에 비추어 볼 때 이의 施設擴大는 매우 時急한 課題라고 본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今後 施設目標을 1997年까지 11千km, 2010年까지 25千km, 2030年까지 56千km를 施設하여 山林經營基盤이 構築되도록 할 計劃이다.

이 計劃의 效率的인 推進을 위해서 이미 작년까지 全國 山林에 대한 林道基本路線網을 設定하였으며 앞으로 政府豫算支援(現在 國費40%, 地方費40%, 自負擔20%도 增額하여 山主負擔을 줄이도록 努力하는 한편 專門山林開發事業團을 組織하고 林道技術者를 養成 配置하는 등 關聯施策을改善해 나갈 方針이다.

위와 같은 施策下에 今年에는 615km(國有林 185km, 私有林 430km)를 推進할 計劃으로 이를 위한 山林開發事業團의 組織 및 訓練, 豫定地의 選定등 施工準備를 着實히 하고 있는 바 施行設計을 早速히 完

了하여 適期內에 完工토록 할 것이다.

3. 自然休養林 造成

從來 山林의 機能은 木材나 땘감등 林產物 供給이 主目的이었으나 근래 國民經濟가 向上되고 社會가 都市化 產業化 되어감에 따라 增大되고 있는 國民休養 需要處로의 提供이 매우 큰 役割로 대두되고 있다.

政府에서는 이와 같은 山林의 休養機能增進을 위해서 交通이 便利하고 景致가 좋은 山林에 自然休養林을 矮이 造成할 方針下에 一段階로 2000年까지 總 100個所를 造成할 目標로 推進中에 있으며 現在까지의 實績은 '88年에 4個所, '89年에 4個所를 造成하였으며 今年에는 6個所를 造成할 計劃이다.

앞으로 이 事業을 效率的으로 擴大 推進하기 위해서 今年 下半期에 全國的으로 交通이 便利하고 景觀이 좋은 山林을 休養林造成豫定地로 미리 選定하는 한편 現在까지 國·公有林에 優先 造成하던 것을 私有林에도 適地일 경우는 承認을 받아 民資로서 造成케 하고 適正한 入場料를 받게 하는 등으로 休養林造成을 促進함과 아울러 山地의 多目的活用으로 山林所得을 增大토록 해나갈 計劃이다.

4. 木材需給計劃과 林木伐採

木材는 國民經濟와 國家產業發展에 크게 寄與하는 主要 原資材로서 '90年度 總需要量은 前年度보다 約 6%가 增加된 9,683千m³로 策定하고 이의 圓滑한 供給을 위하여 1,508千m³는 國內材를 伐採 供給하고 나머지 8,175千m³는 外材를 輸入 充當할 計劃이다.

상기 需給計劃上 國內材의 供給率은 16

%에 不過한바 이는 今後 木材資源 增蓄을 위한 節伐政策에 의한 것으로 優良한 生立木은 최대한 保育하는 方針下에 各種 被害木이나 支障木, 間伐木 為主로 生產하여 鑛山 杧木이나 亂木 用材 其他 生產用材로 優先 供給토록 하되 營林計劃에 의한 伐採는 최소한 反映 山林經營에 支障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한편 外材의 導入은 資源保有國과의 外交協力의 強化等으로 適期供給에 蹤跌이 없도록 할 것이다.

5. 國有林의 擴大集團化

山林의 公益機能을 增進하고 木材의 長期安定的 供給源 造成을 위하여 現在 山林面積의 20%에 不過한 國有林을 2030年에는 40% 水準으로 擴大할 目標로 推進中에 있다.

對象地域은 既存의 要存國有林에 連接 또는 介在한 私有林을 買收하거나 小面積 分散國有林과 交換하는 方法으로 確保하고 아울러 無主, 은의된 國有林을 環收하는 등의 方法으로 擴大해가고 있다.

今年에는 위와같은 方法으로 10,000ha를 擴大할 計劃인 바 買收適地 要件이나 交換基準等 細部의 内容은 各 營林署 (管理所, 出張所)나 市郡 山林課에 示達되어 있으므로 必要時는 이를 機關에 問議하면 알수 있을 것이다.

6. 國有財產 管理

山林廳所管 國有財產은 130餘萬ha의 山林을 위치하여 田·畠等一部 雜種財產을 包含한 많은 面積의 山地가 全國에 分布되어 있어 이의 合理的인 管理에도 努力할 것이다.

그 중 約 20萬ha는 造林이나 牧畜, 鑛業用 및 公共, 公益用等으로 貸付 또는 使用許可되어 各種 產業用地로 쓰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小面積으로 分散되어 國家가 繼續 保存할 價值가 있는 財產은 實需要者에게 貸付하여 國土의 效率的인 活用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貸付한 財產을 目的대로 使用치 않는다면 事業成功의 가망이 없거나 放置하고 있는 財產에 대하여 使用許可를 取消하는 등으로 事後管理를 徹底히 해나갈 것이다.

한편 境界侵犯, 無斷占有, 權利保全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管理해 나갈 것이다.

7. 法令制度 改善

위와 같은 施策推進에 뒷받침이 되는 山林法의 根據條項을 이미 작년말에 改正하였으므로 이의 細部 施行指針이 월 同施行令, 規則, 要綱等을 今年 上半期中에合理的으로 改正하여 下半期부터는 改正된 法規에 의거 모든 事業이나 施策이 보다 效率的으로 推進되도록 할 것이다.

